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2024년 1월

국 방 대 학 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이 회 상

2024
석사



사 회 통 합 관 직 에 서 연 구
북 한 이 탈 주 민 병 역 세 도 개 선 연 구

이 회 상

석사학위논문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2024년 1월

국 방 대 학 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이 회 상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연구




지도교수 안 경 모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월

국 방 대 학 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이 회 상

이희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안 경 모 

심사위원 홍 태 영 

심사위원 안 준 형 

2024년 1월

국 방 대 학 교

요 약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의 온전한 주체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은 군 입대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일반국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병역문제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크레첼(R. Krechel)은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 두 가지로 구분하고, 정치·경제제도의 통합인 ‘체제통합’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가치통합’이 모두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출발점은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주는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 병역법 개정 및 병역의무 부과 합리적 기준 마련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이었다. 이는 병역법상 “북한이탈주민 대상 출원(出願)에 의한 병역면제” 규정이 북한이탈주민이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출원’ 조건을 삭제하여야 하고,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병역이행 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이라면 ‘병역면제’가 아닌 ‘징집면제’ 처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통합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모색하였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병역의무 이행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심도 깊은 1:1 면담을 통해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와 독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와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평시 군(軍)의 북한이탈주민 장점 활용 제한 및 전시·유사시 근로소집 강제 동원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필요성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병역의무 이행이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자긍심 고취, 체제 적응력 강화 및 차별의식·형평성 논란 해소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한다.

둘째, 군사적 필요성으로, 평시 북한지역 및 대북 전술연구를 지원하고, 북한군 전술에 기초한 대항군 역할 지원이 가능하며, 전시 민군작전과 안정화작전 등에 투입하는 등 한국군 전투수행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입국 시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징집연령인 19세 이후 입국 시 국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하거나 입영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되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5년의 거주지 보호기간'과 <국적법> 상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규정을 고려하여 '국내 입국 후 5년이 경과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중학교 입학 연령인 12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의 조화 차원에서 타당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시작으로, 점차 사회통합 및 정체성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업무 및 정훈·유해발굴 등 후방부대 또는 비전투부대에 배치한 후, 과도기 단계의 시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방·전투부대 배치 등으로 전면 개방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군 복무 부적응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규정이 성장 과정 등의 차이에 따른 정체성 혼란 문제 및 국내 조기 정착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복합적 산물이더라도 향후 병역 자원 급감과 탈북청소년 수 증가, 공정(公正)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강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사회통합 제고, 다문화 군대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헌 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와 이를 위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병역의무 부과 합리적 기준과 단계적 군 복무 확대방안을 제안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향 도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간 나타날 수 있는 이념적 정체성 혼란 및 부대관리상 문제점 등 부작용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 간에 한국사회 완전한 동화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병역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탈북 청소년의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날 탈북청소년의 병역의무 이행 증가에 대비하여 전·평시 군 내 세부적인 활용방안 및 부작용 극복방안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자, 사회통합, 병역면제, 병역이행

목 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선행연구 검토	2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2.1. 사회통합의 개념	7
2.2. 사회통합의 중요성: 역사에서 찾은 교훈	9
2.3.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정책 평가	11
제3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면접조사 결과	13
3.1. 조사 개요	13
3.2. 조사 결과	14
3.2.1.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 및 문제점	14
3.2.2.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 및 고려사항	15
3.2.3.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6
3.2.4.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18
제4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실태	20
4.1. 현행 병역법 검토	20
4.1.1. 병역법 규정 현황	20
4.1.2.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 검토	22
4.1.3. 독일 사례 검토	24
4.2.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	24

4.3.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에 따른 문제점	27
4.3.1.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사회통합 저해	27
4.3.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30
4.3.3. 전·평시 북한이탈주민 군사상 활용 제한	32
제5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향	34
5.1.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필요성	34
5.1.1. 사회적 필요성	34
5.1.2. 군사적 필요성	36
5.2.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제도화 시 고려사항	39
5.3.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부과기준 설정	40
5.3.1.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준용: 국내 입국 후 5년 이상	41
5.3.2. 국적법상 일반귀화 요건 준용: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	41
5.3.3. 중학교 입학연령인 12세 이전 국내 입국자	42
5.4.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의 단계적 확대방안	42
5.4.1. 사회복지무요원제도 시행	43
5.4.2. 후방·비전투부대 배치: 대북업무·유해발굴단 등	45
5.4.3. 전면적 확대: 과도기 단계의 시행결과 평가 이후	46
5.5.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제도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 방향	47
5.5.1.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타당성 검토	47
5.5.2. 관계기관 의견 검토	48
5.5.3. 현행 병역법 개정 방향	49
제6장 결 론	51
참고문헌	55
영문요약	63

< 표 목 차 >

<표 3-1> 면접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13
<표 4-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5
<표 4-2> 북한이탈주민 사유 병역면제 현황	25
<표 4-3> 북한이탈주민 병역판정검사 현황	25
<표 4-4> 북한이탈주민 중 병역면제 출원자 규모 비교	26
<표 5-1> 북한이탈주민 관련 각종 현황	37
<표 5-2> 사회복무요원제도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4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6



<부록 목 차>

<부록 1> 북한이탈주민 심층 면접 질문지(양식) 5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온전한 역할과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에 있어서는 ‘원할 경우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일반국민 양측으로부터 차별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완전한 한국사회 동화와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병역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탈북청소년의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후·백인계처럼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헌법상 평등권 구현 및 차별 없는 병역의무 이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감과 정체성·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은 ‘출원(出願)에 의한 병역면제’를 병역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갖고 있음에도 병역의무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차별이나 배제의식을 초래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방향, 병역의무 부과 기준의 합리적 기준 및 병역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통합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현행 병역법 규정의 입법취지,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와 문제점,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과 고려사항, 병역의무 부과기준의 합리적 설정, 병역의무 이행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사회적응 또는 정착실태, 정착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회통합, 병역정책, 전시·유사시 군에서의 활용방안 등의 범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사회적응과 관련한 분야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폭넓은데,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사상, 경제, 문화, 사회관계, 심리, 건강의 수준과 변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적응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사회 부적응의 원인을 개인적 문제에서 찾는 ‘약점 관점’(weakness perspective)과 북한이탈주민에게 부적응의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자 비난’(blaming the victim)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기존의 사회적응 또는 동화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권숙도(2014)¹⁾는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사회로 온전히 흡수하거나 동화시키려는 노력만 있을 뿐,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준영(2012)²⁾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쉽사리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로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시혜적인 민족주의 기조의 동화정책 자체에 있다고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쌍방의 기여에 입각한 통합주의적 시각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전성우(1997)³⁾는 통독 과정에서 서독이 자본주의적 가치와 행동원리를 동독 주민들에게 강요함에 따라 동독 주민들이 심각한 자기 정체성과 자긍심의 훼손을 경험했고 이것이 동독 주민의 자율적인 변화를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윤인진

1) 권숙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연구』, 23, 1(2014): 101-126.

2)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 1(2012): 271-300.

3) 전성우,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97, 4(1997): 1-44.

(2019)⁴⁾은 남북한 양 사회가 가진 강점과 약점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서로의 강점이 최대한 활용될 때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국민 간의 사회통합,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하고 있는 병역이행의 가치를 토대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일반적 시민이므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동일하게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군 입대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동시에 일반국민들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동완(2012)⁵⁾은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주제로 징집대상 연령층인 남한 일반청년 및 탈북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소수자 인권 침해의 틀로 조망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병역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북한이탈주민 대상 출원(出願)에 의한 병역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의 타당성 분석이나 개선 방향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오주영·정해빈(2013)⁶⁾은 병역법상 북한이탈주민 대상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규정이 북한이탈주민 입대 시 한국군(軍)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병역의무를 면제시키려는 것이라면 ‘출원’ 조건을 삭제하여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병역이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면 ‘병역면제’가 아니라 ‘징집면제’ 처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였으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병역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

4)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 1(2019): 61-92.

5)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8, 2(2012): 257-264.

6) 오주영, 정해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13(2013): 289-290.

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이병연(2013)⁷⁾·조종욱(2017)⁸⁾은 전시 자유화지역 안정화작전이나 통일대비 민군작전 수행 간 북한주민 성분 분류·적대세력 색출 지원, 민군작전 요원 등으로 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면제는 현역으로의 징집면제는 물론, 전시근로소집까지도 면제하는 처분임에 따라 전시에 군사지원업무를 위한 강제소집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전시 또는 유사시 북한이탈주민 활용방안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출원에 의한 병역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 사회적 필요성은 물론, 군사상 필요에 의한 전·평시 북한이탈주민 활용방안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병역의무 부과기준의 합리적 설정 및 병역의무 이행의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 방안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사회

7) 이병연, 『통일을 대비한 민군작전 추진 전략: 탈북자 활용방안 중심으로』(연구논문, 국방대학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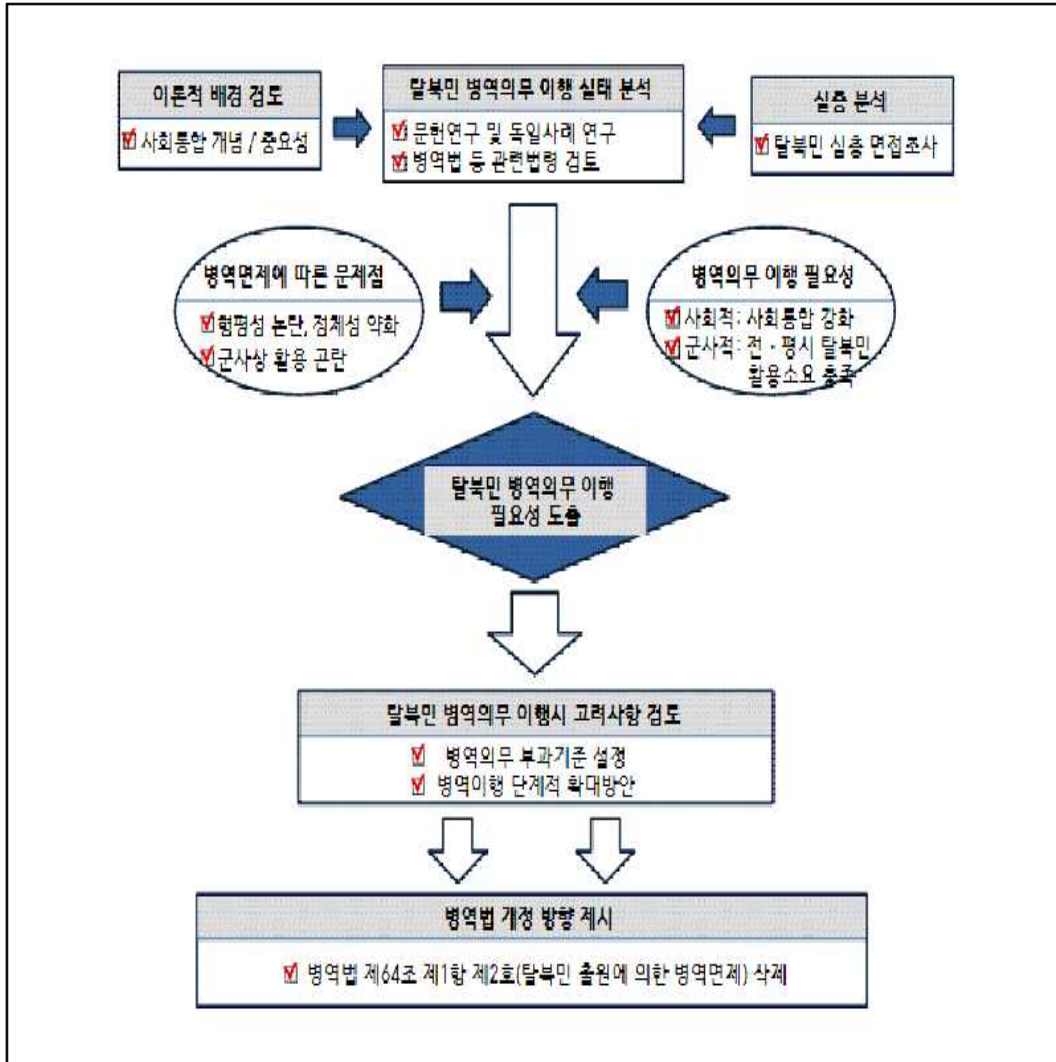
8) 조종욱, 『전시 자유화지역 안정화작전간 탈북주민 활용방안』(연구논문, 합참대학, 2017)

통합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현행 병역법 규정 현황과 독일 사례,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사회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필요성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여건 보장을 위한 병역의무 부과 합리적 기준과 단계적 군 복무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병역법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 분석은 연구대상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단행본, 정기 간행물, 논문 및 안보·군사 분야에 관한 공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면접조사는 국내 정착기간·연령·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심도 깊은 1:1 면담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사회통합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제3장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병역제도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할 것이고, 제4장은 현행 병역법 규정, 입법취지 및 독일 사례를 검토한 후,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필요성을 사회적 관점과 군사적 관점에서 모색하고,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병역의무 부과기준과 단계적 군 복무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병역법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와 성과를 요약하고, 아울러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점과 차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정의를 달리할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응이나 사회구조적 차원의 체제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사회 구조와 사회 전체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개인이나 집단이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 구조에 상호 작용하고 통합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개인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 과정을 의미하며, 주로 이민이나 귀화 등이 해당된다. 사회구조적 통합은 하나의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다수의 하위체계가 공동의 질서 하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⁹⁾

라인하르트 크레첼(R. Kreckel)은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면서, 체제통합이라는 하위체제의 통합과 가치통합이 모두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체제통합’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통합을 의미하며, ‘가치통합’은 체제통합에 더하여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통합 과정을 말하는데, 상호 이해수준, 교류수준 및 정체성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⁰⁾

크레첼이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9) 권숙도, 전계논문, p.103.

10) Reinhard Kreckel,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9), 90.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28, 2(2010): 272. 재인용

란덱커(W.S. Landecker)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사회와 가치의 역할, 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범적 통합, 의사소통적 통합, 기능적 통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규범적 통합’이란 사회문화의 핵심적인 공동의 가치가 사회체제 내에서 구조화되는 것이고, ‘의사소통적 통합’이란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핵심 수단을 의사소통으로 보는 관점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능적 통합’은 분업에서 비롯된 사회문화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각 분야별 전문성이 높아지고, 분절화된 개인은 상호 필요에 의해 공생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사회통합은 사회 내에서의 핵심가치를 구조화하고 문화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이처럼 사회통합은 한 사회체제에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의 가치에 대한 통합,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의 한 측면인 가치통합은 세부적으로 구성원 간의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통합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내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

위에서 살펴본 관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합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하는 체제통합의 측면과 함께 동일민가치를 공유하는 정서적 응집성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이란 외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제도로서의 한국 사회체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내적으로는 한국 사회체제의 가치 기초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고 사회적

11) Werner S. Landecker, Types of Integration and Their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6. No.4(1951), 332-340. 권숙도, 전계논문, p.103. 재인용

12) 권숙도, 전계논문, p.104.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제고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의 제도화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사회통합의 중요성: 역사에서 찾은 교훈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초강대국들은 각기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 우위에 오르기까지 한결 같이 매우 다원적이고 관용인 나라였다는 것이다. 모든 강대국들에게 관용은 패권을 장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¹³⁾ 즉 강대국의 비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용’인 것이다. 강대국은 타인에 대한 배척의식과 이분법으로 상대를 구분지어 차별하지 않았으며, 관용의 정신과 정치를 통해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로마 제국 정복을 위한 침공 시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과 전략이 있었다. 그는 불과 3만 6천여 명의 병력으로 백만 대군의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였다. 알렉산더 전략이란 로마와 유사한 도시국가 형태를 지녔던 아테네 연합체에 금을 내고 그 구성원인 도시국가를 하나씩 차례로 정복해 나갔다. 그리고서는 다른 도시국가들에 이 정보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다렸다. 이윽고 하나 둘 이탈하는 도시국가들이 나타났고 결국 힘이 약해진 아테네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테네를 정복했던 방법을 면밀히 연구한 한니발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방법으로 도시국가 연합체인 로마의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으로 넘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로마 연합체 소속 도시국가들은 변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로마를 위해 죽기 살기로 응전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 시민권’에

13) Amy Chua, 『제국의 미래』, 이순희 역(서울: 비아북, 2008), 7.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종과 출신을 차별하지 않고, 야만인에 가까운 족장들 까지도 일단 로마에 귀속되는 순간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나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고, 능력에 따라 다양한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 등 수많은 로마 지도자들의 출신이 크게 변변치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반면 아테네는 순수 혈통주의 국가였다. 시민권은 아테네 도시국가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었고, 귀족 계급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 혈통을 지녀야만 했다. 거대한 국가를 방만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테네의 결정적인 실수이자 로마와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다.

칭기즈칸 당시 몽골에서는 전쟁에 패배한 부족은 모두 멸살시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달랐다. 항복한 상대 부족을 몽골 제국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종교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 보유자나 성직자, 학자들을 포용하여 적극 활용하는 등 전략적 관용을 베풀어 사회통합을 유도하였다. 이는 혈통과 부족 자체를 중요시하였던 당시 부족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통치였으며, 이를 통해 칭기즈칸은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닌 장점에 더해, 피정복민들이 지닌 화약 등 신식 무기 등 신문물을 그대로 흡수, 발전시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20세기부터 패권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이런 면에서 로마 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미국은 지구상 거의 모든 민족이 융화되어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다. 그래서 ‘인종의 용광로’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미국에는 유럽계 백인, 아프리카계 흑인, 아시아계, 중남미계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동일한 사회적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반면 나치는 게르만 민족이라는 단일 민족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민족적 우월성과 순수성을 유지하려 피정복국가 국민들을 철저히 분리하고 배척하였고, 일본 제국주의도 타국의 장점을 흡수하거나 통합하려는 노력은 없이 철저하게 자국민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려 자국 문화만을 강요하며 잔인무도한 불관용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강대국은 단일 민족을 추구하였던 국가가 아니라 공고한 연합체, 개방사회에서 만들어졌다. 로마, 몽골, 미국의 사례가 그렇다. 진정한 강대국은 단일 민족, 단일 국가에서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개방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이 결합되고 강자와 약자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며, 사회통합의 풍토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질적 존재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제3절 사회통합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정책 평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왔다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출신배경과 탈북동기 등으로 인해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정체성도 분명하지 못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이중적으로, 민족·인권적 측면에서는 동질감과 동정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에게 투영되어 불신과 의심이 혼재된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포섭과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인식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주변화’(marginalization)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 국민으로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화’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 사례가 바로 ‘병역’ 문제이다. 병역법¹⁴⁾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14) 병역법(법률 제19081호, 일부개정 2022.12.13, 시행 2022.12.13.)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항 제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이를 강제조항으로 잘못 인식하여 국내 입국 후 일괄적으로 병역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연령이 되면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신청서를 송부 받아 제출하고 있다.¹⁵⁾ 법적으로는 ‘희망할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애매모호한 동 규정 입법취지와 이에 따른 잘못된 인식, 병무행정 관행에 의해 일괄적으로 병역면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⁶⁾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 달리 병역판정검사조차 받지 않고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차별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체제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징집연령대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역면제를 혜택이 아닌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고 병역이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⁷⁾

결국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및 지원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으나, 이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확립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하여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주변화’ 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선 지금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인과 동일한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주변화’를 넘어 ‘사회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병역정책 방향 전환 모색이 긴요하다 할 것이다.

15) 면접참여자2는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가 현재 병역면제를 신청하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군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16) 권숙도, 전계논문, pp.115-116.

17) 강동완, 전계논문, pp.257-264.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징집연령층인 19~25세 청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한 결과,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년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 복무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3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면접조사 결과

제1절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제도와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1:1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이며, 면접 대상은 연령, 국내입국 시기 및 직업 등을 종합 고려하고,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원 4명을 선정하였다. 연령별로 20~50대, 국내정착 기간으로는 4~5년 또는 14~15년, 직업별로는 학생(석·박사 과정), 회사원, 공무원 등 면접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

<표 3-1> 면접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구 분	나이	탈북/입국시기	직업	거주지
참여자1	27세	2015년	대학원생	서울
참여자2	38세	2005년	회사원	서울
참여자3	42세	2004년	공무원	서울
참여자4	53세	2014년	박사 과정	서울

면접 대상자에게 ① 북한이탈주민들이 현행 병역면제 제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 및 병역의무 면제에 따른 문제점, ②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 ③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시 긍정적 효과, 예상 문제점 및 고려사항, ④ 병역의무 이행 시 바람직한 군 내 보직, ⑤ 병역의무 부과기준, ⑥ 병역의무 이행 형태 및 단계적 군 복무 확대 방안, ⑦ 일반인과 동일한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에 대한 의견 등을 주제로, 1:1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제2절 조사 결과

1.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 및 문제점

현재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병역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이유와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에 대한 찬반 의견, 병역의무 면제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면접참여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가 현재 병역면제를 신청하는 이유로, 면접참여자1은 “북한에서 직접 겪거나 보고 들은 군 생활에 대한 환멸,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국내 조기정착에 대한 조바심 및 학업에 지장” 등을 꼽았다. 면접참여자2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군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병역의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3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군에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꼽았다. 면접참여자4는 “한국사회 적응이 우선이라는 인식, 북한군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10년 장기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군 복무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출원에 의한 병역의무 면제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 면접참여자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 면접참여자1은 “한국 주민들과의 형평성, 통일에 대한 열망,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군 면제 시 장차 한국사회에서 생활 간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 우려”를 꼽았고, 면접참여자2는 “남북 분단 상황하 한국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3은 “국민의 의무는 동등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부여받고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도대체 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서 일반인과 달리 병역의무의 자율권을 부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분명한 차별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강제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면접 참여자4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보위는 당연한 사명이자 의무로, 사회적 형평성 및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표시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면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면접참여자1은 “형평성 논란에 따른 한국인과의 갈등 가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 내 부정적 이미지 증가, 직장 등 사회생활 간 내부적 소통 문제, 정체성 혼란”을 꼽았다. 면접참여자2는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에 있어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고, 특히 취업과 사회생활 속에서 군필자에 대한 대우와 군 생활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면접참여자3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미약해지고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들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정착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4는 “한국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꼽았다.

2.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 및 고려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 및 제도화 시 긍정적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한 면접참여자들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시 긍정적 기대효과로, 면접참여자1은 “사회통합,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사회정착 과정에서 소통 능력 향상” 등을 꼽았다. 면접참여자2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장점을 살려 한국군의 대북 안보의식 및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로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3은 “남북한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합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4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및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명감을 높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면접 참여자1은 “군대 내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간적 손실, 학업기회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면접 참여자2는 “북한에서 한국군 정보 수집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하여 침투할 가능성, 준비되지 않은 인원에 의한 군 내 부적응과 물의 야기 가능성”을 꼽았다. 면접참여자3은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내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하는 경우 많은데, 부모가 병에 걸려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들이 군에 갈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면접참여자4는 “병역의무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시 고려사항으로, 면접참여자 1은 “병역의무 이행과 사회적응의 균형,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 복무에 따른 사전 군 내부 문화 정립”을 꼽았다. 면접참여자2는 “위장 북한이탈주민 군 입대 가능성 차단”으로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3은 “한부모 가정과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4는 “병역의무 부과 연령으로 15세 미만의 나이로 입국해 한국 내에서 일정한 학교 교육을 받고 성장한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세 이상의 나이로 입국한 경우는 병역의무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부과기준, 바람직한 군 내 보직, 병역의무 이행 형태, 단계적 군 복무 확대방안, 일반인과 동일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방향에 대한 면접참여자들의 의견과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부과기준으로, 면접참여자1은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면접참여자2는 “일반적인 입영연령인 19세~36세인 자 중에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보유자, 국내 입국 5년 이상, 한국에 가족이 있는 자”를 제시하였다. 면접

참여자3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4는 “국내 입국해 정착한 기간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되, 입영연령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바람직한 군 내 보직 방안으로, 면접참여자1은 “대북정보, 안보교육, 경찰, 특수전 분야 등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면접참여자2는 “일반 보병, 경비·경계병, 안보교육 분야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3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가급적 본인의 희망과 선택이 고려되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면접참여자4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직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이행 형태와 단계적 군 복무 확대방안(사회복무요원 제도 → 후방·비전투부대 → 전방·전투부대)에 대해, 면접참여자1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면접참여자2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3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르되, 단계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일반부대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면접참여자4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군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일반인과 동일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면접참여자1은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 정체성 확립, 한국인과의 동질감 증진, 북한에서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군 전투력 제고에 기여 등을 위해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2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부정적 영향도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므로 병역법 개정 방향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면접참여자3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법을 적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반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참여자4는 “북한 독재체

제의 부당성을 체험하고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군 발전과 안보의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심층 면접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참여자들은 현행 병역법상 ‘북한이탈주민 대상 출원에 의한 병역의무 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였다. 그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전한 사회통합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 빠르면서도 바른 국내정착을 위해서는 일반인과 동등한 병역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면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형평성 문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 취업 시 불이익, 직장 등 사회생활 간 내부적 소통 문제 및 사회통합에의 부정적 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으로, ‘사회통합,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호적 인식변화 유도, 정착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소통 능력 향상’ 등을 들었다. 반면 병역의무 이행 간 위장 북한이탈주민 군 입대 가능성, 군 내 부적응과 그에 따른 물의 야기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시 고려사항으로는, ‘합리적 병역의무 부과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병역의무 부과기준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반영하여 입국 시 연령·국내정착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와 단계적 군 복무 확대방안(사회복무요원제도 → 후방·비전투부대 → 전방·전투부대)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면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단계적 시행 시 병역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하였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하면서, '사회통합, 정체성 확립, 한국인과의 동질감 제고, 북한에서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군 전투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 등의 차원에서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병역면제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과 병무당국 간 협업 등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실태

제1절 현행 병역법 검토

1. 병역법 규정 현황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18)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징집대상이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62년 제정된 〈병역법〉 제48조19)에 ‘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조문으로 최초 입법화된 후, 1983년 동법 전부개정 시 지금과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1993년 동법 전부개정을 통해 제64조로 이동되어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처분을 ‘출원(出願)에 의한 병역면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상의 병역면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병역면제로 지칭되는 ‘징집면제’와 확연히 다른 개념으로, 전시근로역²⁰⁾에도 포함되지 않아 전시에 군사지원업무를 위한 강제 소집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 18) 병역법(법률 제19081호, 일부개정 2022.12.13, 시행 2022.12.13.)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중략)…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19) 병역법 제48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국방부장관은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또는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해 온 징병적령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20)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략)…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의미한다. 현행 병역법상 18세 이상의 남성이 이처럼 전·평시 모두 완전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²¹⁾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이 두 가지 경우뿐이다.²²⁾ 수형자(受刑者), 생계곤란 등 일반적으로 병역면제 사유로 일컬어지는 것은 단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뿐인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이들은 단지 평시에 현역으로의 ‘징집면제’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시에는 군사지원업무를 위한 강제적 근로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²³⁾

따라서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법령 규정상으로 한국군(軍)은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병역법상 흑·백인계처럼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부과 받아 이행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 군 입대²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한국사회 완전한 동화 등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

21)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중략)…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2) 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128호, 일부개정 2023. 9.11, 시행 2023. 9.11.) 제93조 제1항(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에 따라 병역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첫 번째가 전신기형·질병·심신장애자 등의 경우이고, 두 번째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다.

23) 오주영, 정해빈, 전개논문, pp.289-290.

24) 군복무 마친 탈북자 1호 나왔다…국민의무 다했을 뿐. 『연합뉴스』, 2016년 6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609030800014?input=1195m>(접속일: 2023.10.13.)

나인 병역의무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병역법이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그 타당성 여부, 동 조항 입법형식에 내재된 문제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다.

2.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 검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규정한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나 배경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거의 없다. 동 조항이 최초 신설된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입법 의도나 배경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후 해당 조항이 개정되는 1970년, 1983년, 1993년의 국회 회의록에서도 그 입법 의도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²⁵⁾

이와 관련, 병무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규정의 도입 배경에 대하여 “1960년대 병역법 신설 당시 자발적 탈출자들에 대한 시혜 조치로써 도입되었으며, 사회이념이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⁶⁾

한편, 북한이탈주민 대상 병역면제 조항이 입법화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취지를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불순한 북한이탈주민이 위장 입대하거나 내부의 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될지라도 불가피하게 병역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무청의 설명처럼 사회이념이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정책적 배려나 시혜적 조치로 병역이행을 면제시켜준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이 조항이 위장 입대 등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으로 내부의 적이 될

25) 국회 제75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2차(1970.12.21.) 회의록 p.15. “제25조는 미수복지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와 면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 귀순해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26) 김병기 국회의원실. 북한이탈주민, 절대 다수는 병역면제 택했다. 『보도자료』, 2020년 10월 13일.

27) 오주영, 정해빈, 전개논문, pp.297-298.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한국군으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기 위해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되었다면, 그 입법형식에 문제가 있게 된다. 현행 병역법은 ‘원하는 사람에게’ 병역면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위장 군 입대 가능성 차단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의무로부터 배제시켜야 한다면 군 입대를 위한 자원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잠재적 내부의 적을 한국군에서 원천 배제시키는 것이 입법의 의도라면,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인 병역의무 이행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시혜적 조치로써 병역을 면제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역 징집만을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역 징집면제만이 아닌 보충역 및 전시 근로소집대상 등 평시는 물론, 전시에서도 일체의 병역의무를 면제 처분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인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현행 병역제도상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 및 대체역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역 징집만을 면제해 주어도 되기 때문이다.²⁸⁾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을 평시 현역 복무는 물론, 전시근로역에서도 배제시켜 국민 총동원이 필요한 전시에도 근로소집대상으로 강제 동원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현행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순수한 배려 차원으로 이해되기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형식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잠재적인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국군에서 원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여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병역자원으로서의 현실적 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한국사회 안정적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 또는 시혜적 의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28) 오주영, 정해빈, 상계논문, pp.301-302.

다만 출신지역이 단지 북한이라는 사유가 병역면제 처분을 부과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현행 입법형식은 입법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이라는 일반국민의 인식 제고는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 독일 사례 검토

서독은 ‘혈통주의’(jus sanguinis)에 따라 동독 국민에게도 <독일 기본법> 상 규정된 서독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서독으로 온 동독 탈출 남성은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부담하였다.²⁹⁾ 즉 서독 정부는 동독 탈출자에게 동독 출신이라는 사유만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일괄적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한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1962년부터 병역법에 별도 조항을 두어 병역을 면제해 온 것과 확연히 대조되는 것으로, 단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만을 병역면제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병역판정검사도 없이 병역면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현행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실태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범유행에 따라 북한이 국경 봉쇄를 대폭 강화하면서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자 수도 2018년 149명, 2019년 200명, 2020년 160명, 2021년 85명 및 2022년 8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 기간 동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인원은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확인이 제한됨에 따라³⁰⁾ 과거 병역법 개정 과정에서 공

29) 엄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93.

30)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사유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판정검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개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명으로, 이 중 실제 입영자는 2014년 1명이 있었다.³¹⁾

<표 4-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구 분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남 성	517	35	40	72	202	168
여 성	2,026	32	23	157	845	969

출처: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검색일: 2023.11.27.)

<표 4-2 북한이탈주민 사유 병역면제 현황>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682	88	85	160	200	149

출처: 병무청의 정보공개청구 통지 결과(통지일: 2023.11.23.)

<표 4-3 북한이탈주민 병역판정검사 현황>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검사인원	3	3	3	0	1
검사결과	현역대상 3	현역 2, 사회 1	현역대상 3	0	현역대상 1
최종처분	입영 1, 대기 2	면제 3	면제 3	0	면제 1

출처: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권기원) 검토보고서(2015.11.13.)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없어 병무청 대상 정보공개청구(2023.11.13.)를 통해 최근 5년 간 통계자료를

(2023.11.13.)에 대한 병무청의 통지(2023.11.23.) 결과로,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간 수검자가 북한이탈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통계 자료가 없다”고 설명

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547)에 대한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권기원) 검토보고서, 2015년 11월 13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를 매년 발생하는 신규 병역면제자의 전체 규모 등과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4> 북한이탈주민 중 병역면제 출원자 규모 비교

구분 \ 연도	2022	2021	2020	2019	2018
북한이탈주민 중 병역면제자 수	88	85	160	200	149
전체 병역면제자 수	13,857	14,536	16,059	18,127	18,252
현역병 입대 규모(징집+모집)	186,201	215,754	236,146	224,062	222,517
신규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의 규모	35	40	72	202	168
귀화자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자 규모	435	487	755	630	651

출처: 병무청의 정보공개청구 통지 결과(통지일: 2023.11.23.)

<표 4-4>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규모는 전체 현역병 입대 규모와 비교해 볼 때 한국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규모는 전체 병역면제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이는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규모보다도 적고, 현역병 전체 규모와 비교할 경우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도 징집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니는 병역자원으로서 갖는 현저히 낮은 현실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한국사회의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거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또는 북한 불안정사태로 인해 대량 탈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 제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입법 과정에서 그 입법목적이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데다,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일반국민 양측 모두로부터 차별의식과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에 따른 문제점

1.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사회통합 저해

한국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유례 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향후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거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한국 사회 내부에서 언제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사회적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상존한다.³²⁾ 한국사회에서 병역문제는 국민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후보자가 본인이나 아들의 병역 문제로 곤경에 처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병역이행 여부는 단순한 국가관 평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정서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중 징집대상 인원이 소수일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법체계에 의한 병역면제 처리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겠지만, 병역자원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점차 그 수가 늘어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는 사회통합과 형평성 측면에서 장차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한편 2010월 1월 25일 일부개정(법률 제9946호, 시행 2011.1.1.) 전의 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 수행에 심각한

32) 면접참여자1은 면접조사 간 “병역면제 제도 지속 시 형평성 논란으로 한국인과의 갈등 가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증가, 직장·사회생활 간 소통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 변경)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승민 국회의원은 2009년 8월 25일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병역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충되는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병역의무 및 지원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고 이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전문위원 이규담)에서 상기 제안 법률안을 검토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³⁾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하고 있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병역의무는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동법 제3조의 규정과 상충되고 있고, 헌법상 보장하는 평등권(제11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혈인 중에서도 아시아계와 흑·백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인종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아시아계 혼혈인은 현재 거의 현역에 입대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흑·백계 혼혈인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고 있다.³⁴⁾

3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국회 국방위원회), 2009년 12월.

이에 따라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차별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수³⁵⁾ 등을 고려해 볼 때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 이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흑·백계 혼혈인의 경우 자칫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휘관의 지휘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적절한 보직관리를 통하여 완화토록 하고, 계속하여 군에 적응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65조 제1항 제1호³⁶⁾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역의무 수행에 있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예외를 두지 않고 이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검토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개정안이 2010년 1월 25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도 병역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정부는 2018년 2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 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³⁷⁾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하는 귀화자에게도 군 복무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³⁸⁾

34) 흑·백 혼혈인 전시근로소집 편입 현황(2023.11.23. 병무청 정보공개청구 통지 결과)

구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인원(명)	-	-	-	1	-

35) 다문화 가족 자녀의 현황(2023.11.23. 여성가족부 정보공개청구 통지(접수번호 11472412) 결과)

연령	계	16~18세	13~15세	7~12세	6세 이하
인원(명)	299,440	29,294	51,546	109,519	109,081

36)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다.

37) 이낙연 국무총리,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제 -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년 2월 12일.

그러나 2023년 11월 26일 현재 병역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귀화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남성은 병역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35세 이하 귀화남성에 대한 병역의무화 추진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현재 35세 이하 귀화남성에 대한 병역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 등에 대해 검토 중인 바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 또한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다.³⁹⁾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약화

지금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달리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게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⁴⁰⁾ 즉, 외형적으로는 한국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차별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병역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법적 요건(requirement)을 설정하고 이 요건을 충족시킨 인원에게만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정상인 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자격(qualification) 또는 권한(competence)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 요건을 충족한 인원은 ‘정상’ 국민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은 ‘비정상’, ‘열등’ 또는 ‘2등(second class)’ 국민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⁴¹⁾

향후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이라는 정서적·인식적

38) 귀화자 군복무 의무화되나...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위해 검토, 『중앙일보』, 2018년 2월 1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66810>(접속일: 2023.10.26.)

39) 국방부 대상 ‘35세 이하 귀화남성 병역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 질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2023.11.13.) 통지 결과(접수번호 11472810, 2023.11.16.)임.

40) 면접참여자1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부정적 이미지 증가가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41) 강동완, 전계논문, p.243.

통합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현행 병역 제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은 장차 남북한 사회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문제는 국가안보와도 연관되어 있어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 복무를 제한하는 것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자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제도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지난 2012년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입영 연령인 19세 이상 인원 대상 군 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고 알려진 바 있는데,⁴²⁾ 최근 ‘북한이탈주민 대상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제도 개정 추진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정보공개청구(2023.11.13.)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 중인 바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도 없다”고 답변(2023.11.16.) 하였다.

한편 강동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38.2%로 나왔는데, 특징적인 점은 그 이유로 대다수인 78%가 ‘남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는 13%의 응답률보다 현격히 높은 수치로, 한국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안상의 우려로 북한이탈주민의 군 입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현행 병역면제 제도에 문제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안보상의 우려가 해소된다면 북한이탈주민도 병역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병역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남성은 물론, 여성의 응답률 또한 80% 이상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소수자로서의 인권 보호보다는 형평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³⁾

42) 국방부 다문화 군대 맞춰 탈북청소년 입대허용 추진, 『동아일보』, 2012년 5월 14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14/46219752/1>(접속일: 2023.11. 5.)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어려운 여정을 거쳐 이주해 온 사람들이고 한국사회에서 일반인으로 동화되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병역이행 여부는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 다니게 될 핵심적 요소로 오히려 역차별이나 구별 짓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처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⁴⁴⁾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도 동등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 상한기준을 현행 35세인 일반인보다는 하향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전 · 평시 북한이탈주민의 군사상 활용 제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로, 유사시 안정화작전 활용 및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군사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전략자산이다. 특히 한국군의 북한관련 업무 및 군사작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문 군 안보강사로 활용할 경우 장병 정신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방부·정보본부·정보사·777부대 등 대북 전문부대(서)에 배치될 경우 북한정보 분석·감청 업무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특전사에 배치되어 북한 지리 및 어휘 분야 연구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⁴⁵⁾

또한 전시·유사시 북한 지역 조기 안정화와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도움과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43) 강동완, 전계논문, p.255.

44) 면접참여자2는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크다. 특히 취업과 사회생활 속에서 군필자에 대한 대우와 군대 생활이 주는 사회적응에 대한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45) 노석조,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8), 27. “이스라엘군은 사막 유목 민족인 베두인으로 구성된 경찰부대를 창설, 사막 순찰과 현지주민과의 소통 촉진에 활용하고 있다”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북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경우 북한 안정화 작전 간 북한주민·군인 대상 친한화 및 친군화 활동, 소통 촉진, 지역안내·정보제공, 북한주민·군인 성분분류, 저항세 활동 차단, 치안·선무활동 등 제반 활동 지원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유사시에도 군사상의 다양한 활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실제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함참·특전사 등 군에서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겠으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는 데다, 전시 또는 유사시에는 일시에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필요로 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 강제성이 있는 ‘동원’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평시뿐 아니라 전시·유사시 다수 인원을 적기에, 신속하게, 또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시근로역 편입 등 강제 동원에 필요한 법적 장치 마련이 선결적으로 요구되어진다.

제5장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향

제1절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필요성

1. 사회적 필요성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은 그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정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래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북한이탈주민을 ‘그들’과 ‘우리’라는 사회적 배제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여기기보다 차별적 인식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인식적 배제 외에 국가가 애매모호하게 설계한 병역법 조항과 병무행정 관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분’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의무 이행에 있어 예외를 두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의무에 사실상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배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처럼 그 입법취지가 모호한 법조항과 결부된 병무행정 관행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 확립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찾아 이주해 왔지만 결국 온전한 국민이 아닌 차별적 존재로 인식됨으로써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착지원 제도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정부가 복지와 혜택을 아무리 많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국가로부터 배제된 영역이 존재함에 따라 온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병역 문제는 사실상 국가의 반(半)강제성으로 인해 개인의 의사가 침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⁴⁶⁾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이라는

46) 강동완, 전계논문, pp.272-273.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제한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군 복무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막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배두인의 ‘사막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여 배두인으로 구성된 정찰부대를 운영하며 국경 사막지대 순찰과 현지정보 수집 임무를 맡김으로써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의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⁷⁾

한반도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북한 주민의 대량탈북 현상이 수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자”라는 현행 법 조항의 실질적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고, 이들이 이주민으로서의 제한된 신분으로만 지속 생활하여야 하는가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정한 남북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있는 사회적·인식적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분단 시기에 형성된 남북한 출신이라는 서로의 인식적 괴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단일 국가 하에서 하나의 국민이라는 인식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는 장차 남북한 주민 통합 시 인식적·정서적 괴리감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⁸⁾

다만 분단 기간 동안 각자 상이한 체제와 환경 속에서 고착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낯선 곳에서의 정착생활 간 언어, 문화,

47) 노석조, 전계서, p.30.

48) 면접참여자3은 “남북한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합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타파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 등에서 사회적 제약과 편견을 받게 된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남겨 두고 왔을 경우에는 정체성 혼란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군인이 되도록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서적 측면에서 문제 소지도 없지 않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 복무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처럼 이들이 사회적 소수일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규모가 지속 증가하거나 한국 내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부각될수록 소수자 배려 측면보다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의 가치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원 혜택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신분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특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규모가 점차 커져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자’라는 사회적 의미와 제한성이 완화된다면 현재와 같이 단순히 출신 지역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주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

2. 군사적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두 체제를 모두 살아본 고귀한 경험을 체득한 데 이어,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서 지식을 쌓은 엘리트들이다. 이처럼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북한이탈주민이야말로 북한 재건의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⁵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 역량을 바탕으로 평시 체계적인 교육이 수반될 경우 전시·유사시 한국군의 안정화작전 간 정부 행정기관에 필요한 대북 정보 제공, 주민순화를 위한 선무활동 지원, 주요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경계 제공, 전후 복구·구호활동 지원, 기타 정부 요청사항 확인, 북한사회 질서유지 및 북한주민과의 소통 촉진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⁵¹⁾

49) 면접참여자2는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부과기준으로 ‘한국에 가족이 있는 자’를 제시하였다.

50) 면접참여자2는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 중 하나로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이들의 장점을 살려서 한국군의 대북 안보의식 및 정신전력 강화에의 기여’를 꼽았다.

51) 조중욱, 전계논문, p.6.

<표 5-1> 북한이탈주민 관련 각종 현황⁵²⁾

입국 현황(2022. 9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잠정)
남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17
여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25
합계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42

입국 당시 연령 현황(2022. 9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1	1,705	2,623	2,157	1,396	586	352	9,470
여	646	2,106	6,969	7,557	4,608	1,461	995	24,342
합계	1,297	3,811	9,592	9,714	6,004	2,047	1,347	33,812

재북 직업별 현황(2022. 9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등)	계
남	411	720	4,167	3,215	93	84	234	546	9,470
여	139	161	9,222	11,954	1,454	221	526	665	24,342
합계	550	881	13,389	15,169	1,547	305	760	1,211	33,812

재북 학력별 현황(2022. 9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소학교)	중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기타	계
남	418	135	806	5,740	856	1,122	360	33	9,470
여	404	215	1,498	17,725	2,678	1,216	515	91	24,342
합계	822	350	2,304	23,465	3,534	2,338	875	124	33,812

* 해당 학력별 중퇴자 포함

52)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2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군인,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등 다양한 직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고 있고, 출신지역도 북한 전역으로 두루 분포하고 있다. 그 중 직업별로 군인, 전문·관리직 출신이 4.2%, 학력별로 전문대·대학 졸업 이상이 17.3% 정도 되고 있다. 평상시 북한이탈주민을 군 및 통일부 등 정부부처에서 교육·훈련시킬 경우 전시·유사시 군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안정화작전 과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과거 본인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던 곳의 현지지형과 주요 시설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연고지 주민들과의 접촉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⁵³⁾ 또한 이들은 북한과 남한의 생활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와 질적 수준이 높아져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해지는 데 더해, 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그 활용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특히 민사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될 특수전사령부 인원들에 대해 북한 지역 연구 및 전술연구를 지원하고, 북한군 전술에 기초한 대항군 역할 지원이 가능하여 한국군의 대북 전투수행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북 심리전 지원을 위한 심리전 연구와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대북 감청 업무 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⁵⁴⁾

북한이탈주민은 평시부터 전시법 연구, 정부행정 지원, 재건 등의 임무를 숙달하고, 전시에는 출신지역별 해당 민사여단, 안정화사단에 기능별로 조직되어 임무를 수행하며 민사여단의 특수전 요원들과 함께 북한지역에 침투하여 비정규전 수행의 주체가 되어 지역안내 역할과 주민포섭 등의 활동을 하고 해당지역의 치안 및 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심리전을 수행, 북한군의 이탈과 북한주민의 동조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⁵⁵⁾

53) 노석조, 전게서, p.27. “이스라엘군은 사막 환경에 익숙한 배두인으로 구성된 경찰부대를 창설, 사막 순찰과 현지주민과의 소통 촉진에 활용하고 있다”

54) 조중욱, 전계논문, p.41.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증대에 따라 전시에 이들의 존재가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 북한정권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보다 나은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선무활동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군이 진주하게 된 배경을 이해시키고, 북한의 현 상황과 한국군의 작전활동 방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활하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향후 다가올 통일시대의 역군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활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많은 애정을 지닌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전시·유사시 안정화 작전 및 통일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주체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제도화 시 고려사항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병역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형평성 제고 차원 모두에서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연령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9세 이전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탈북청소년의 경우 낮은 학력 수준과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군 복무 부적응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19세 이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입국하자마자 병역판정검사부터 받아야 하고, 국내 환경에 적응할 충분한 기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을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20대

55) 이원희, 북한이탈주민의 실상과 군사적 활용방안 연구 -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한국군사학논총』, 2, 2(2013): 139-149.

중반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북한에서 군 생활을 마친 사람들로 국내에 입국한 후 가장 먼저 한국군에 입대하여 20대 초반인 기존 병사들과 병영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정체성과 가치관, 문화와 연령 차이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겪을 우려가 있다.⁵⁶⁾

둘째,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현행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입영 의무 면제연령은 36세부터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 등을 기피한 자는 38세부터 면제된다. 이에 따라 20세 이후 36세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입영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기피자를 양산하게 되어 오히려 국내정착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⁵⁷⁾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확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충분한 적응과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거주지 보호기간으로 5년을 두고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⁸⁾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부과기준 설정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식과 함께, 정책적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식이 강할 경우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과 사회통합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들이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기본적

56) 면접참여자4는 “병역의무 부과 연령으로 15세 미만의 나이로 입국해 한국 내에서 일정한 학교교육을 받고 성장한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세 이상의 나이로 입국한 경우는 병역의무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57) 면접참여자4는 “병역의무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병역기피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다.

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79호, 시행 2023.3.28.) 제5조 (보호기준 등)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겠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일반적 존재로 인식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특별한 존재에서 일반적 존재로 규정될 때 일반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면제되고 개인적 권리와 요구만을 갖는 존재로 각인될 경우 진정한 사회통합은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역할 부여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의무와 책임의 부과도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준용: 국내 입국 후 5년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기간으로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의 보호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거주지 보호대상 기간으로 5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입국 후 5년 경과자'로 한정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의 조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2. 국적법상 일반귀화 요건 준용: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

외국인의 귀화요건을 정하는 <국적법> (법률 제18978호, 시행 2022.10.1.)은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제5조 제1호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요건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고 한국의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더욱 확산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병역 문제는 사회통합 장애요인 제거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식 함양, 차별의식 해소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한 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빠르고도, 바른’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중학교 입학연령인 12세 이전 국내 입국자

미취학기에 탈북하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일반 청소년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병역면제를 하게 되면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 연령인 12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적어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고 청소년기를 보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 통합 양 측면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4절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의 단계적 확대방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라면 남북 주민들 간의 통합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은 분명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안보의 관점에서는 신뢰하기 힘든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통일에 대비한 사회통합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를 명목상 법조항에 내재된 문제 해소에서부터 실질적인 완화 제도 마련까지 단계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한 사실상 반(反)강제적 법조항과 병무행정 관행을 통해 국가로부터 배제된 국민이라는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는 없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국민 정서, 안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에 있어 단계적이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무요원제도 시행에 이어, 후방부대 또는 비전투부대에 배치하여 복무토록 한 후, 과도기 단계의 시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방·전투부대 배치 등으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병역 이행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사회복무요원제도 시행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한국 대학생은 국가안보의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에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이 두 차원의 조화로운 해결방안으로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가 안보와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안보위험의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⁶⁰⁾ 복무분야별 임무

59) 강동완, 전계논문, p.252.

및 복무형태는 아래의 <표 5 - 2>와 같다.

<표 5 - 2> 사회복지요원제도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⁶¹⁾

업무	복무 분야	주임무	복무형태	복무기관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 가사 및 생활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간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 위생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환자 구호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지원 • 의료활동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국공립병원 소방서,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교육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 교육활동 지원 	주간	교육청 및 초·중·고 (사립 포함), 유치원 등
	장애학생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 	주간	
	문화재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감시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공·능 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및 공원시설 보호지원 하천 및 해양시설 보호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산림청,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
	재난·안전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의 예방·관찰·지도 • 사회질서 유지, 소방안전,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소방서, 경찰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해양항만청 등
	행정기관 경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등 시설물 관리지원 • 방호·경비지원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항만공사 등
행정	일반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업무 외의 복무 분야에서 사무보조 민원 안내 상담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교육청 및 초·중·고,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등

출처: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검색일: 2023.12.1.)

60)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2023년 11월 28일 검색,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4>.

61)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2023년 12월 1일 검색,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09&mc1=usr0000179&num=7>.

이와 같은 사회복지요원제도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시킬 때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행정 지원 분야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나원⁶²⁾이나 지역 하나센터⁶³⁾ 등에 배치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하나원 교육생의 입장에서도 같은 입장의 북한 출신 사람들로부터 공익적 봉사를 받을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 제고를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 대상 복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한국에 온 후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2등 국민’이라는 열등의식을 지닌 채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신들보다도 더욱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봉사를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 있어 사회보장 시스템과 함께, 개인의 자립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 시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존감 향상은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요원제도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이타적 가치를 생성하고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가치 지향적 국민으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후방 · 비전투부대 배치: 대북업무 · 유해발굴단 등

북한이탈주민의 군 입대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경우 전방 전투부대가 아닌 후방 · 비전투부대 및 대북정보 분석이나 감청,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대에 우선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자신이 한국에 올 때 “남한 군대에 가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상을 알려주고 싶은 결심을

62) 하나원은 1999년 7월에 개원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시 12주간 다양한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 곳으로, 안성과 화천 두 곳에 있다.

63)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역적응센터로, 현재 전국에 25개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했다”고 한다.⁶⁴⁾

북한 현지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의식 변화 유도를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잘 헤아릴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비교체험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대북 심리전 담당부대에 직접 복무하는 방안과 더불어,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임무도 고려해 볼 수 있다.⁶⁵⁾

후방·비전투부대 배치는 단계별 복무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군에서의 보안문제 등 안보상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후방·비전투부대 근무로는 예비군 훈련 관련 부대 및 북한의 실상이나 북한군 등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정훈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남겨진 12만 4천여 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 호국보훈사업인 유해발굴 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함으로써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고양하는 한편, 유가족의 한(恨)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⁶⁶⁾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고하는 차원에서 유해 발굴 업무에 복무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3. 전면적 확대: 과도기 단계의 시행결과 평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강화의 조화를 위한 단계적 병역의무

64) 강동완, 전계논문, p.281.

65) 강동완, 대북전단, DVD, USB 콘텐츠 제작 및 투입상황과 개선방안(대북 미디어의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유스호스텔, 2011년 7월 5일): 43.

6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사업 소개, 2023년 10월 9일 검색, http://www.withcountry.mil.kr/mbs/home/mbs/withcountry/subview.jsp?id=withcountry_010100000000.

이행에 있어 과도기적인 사회복무요원제도와 후방·비전투부대 복무 결과를 종합 평가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군 복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운데, 일반인과 동일한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사회통합 제도 차원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문호를 사회복무와 후방·비전투부대에서 전방·전투부대로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북한이탈주민 병역이행 제도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 방향

1.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타당성 검토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어 온전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실상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와 평시를 망라한 완전한 병역의무 면제는 평등한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병역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차별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고, 또 다문화 사회를 맞아 인종·피부색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해 제2국민역(현재 ‘전시근로역’으로 명칭 변경)으로 편입하여 군 복무를 면제하던 구〈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여 다문화 가정 출신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2010년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문제 없이 정상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차별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한 헌법과 병역법 규정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조문)를 삭제하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2. 관계기관 의견 검토 -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회의록⁶⁷⁾을 토대로

한기호 국회의원은 2015년 11월 24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청원을 받아 그 자녀들이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대우받게 해주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통일부·국방부 등 관련된 기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⁶⁸⁾ 이에 김광진 국회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소속

67)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호(국회사무처), 2015.11.24.

68) 한기호 의원은 “탈북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해서 중년 나이가 되었을 때 병역이행 여부로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니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탈북청년들을 만나 보니 ‘군에 가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여 이 개정안을 제기한 것이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가게 되어 있지만 탈북청년 입장에서는 혼자 입대하겠다고 지원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게 되는 분위기라 문제가 된다. 북한이탈주민도 20대에 온 사람부터 한 살 때 등에 업혀 온 사람까지 매우 다양하다. 갓 난 애기 때 온 사람도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군대에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념과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령에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등 연령이나 각종 제한사항을 마련해 두면 된다. 탈북단체에서는 자기들 2세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본래 본인이 원할 경우 군에 가도록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하고 있으므로, 법사위에서 반대되어 막히더라도 국방위에서는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권기원은 “만 19세 이전에 탈북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자원들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20세부터 36세까지 병역면제될 때까지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문제가 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방부차관 황인무는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고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재 병역연령이 20세부터 36세까지는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역을 희망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양산되는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제시하였고, 각군은 “탈북청소년의 이념적 정체성 측면과 학습 및 성장환경 등의 차이로 부대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보였다.⁶⁹⁾ 통일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점과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⁷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두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 내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동등한 병역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방부와 각군은 병역기피자 양산 우려, 이념적 정체성 문제 등 부대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통일부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현행 병역법 개정 방향

때 있었던 법을 2010년에 개정하여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군대 생활을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9)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전계자료

7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권기원), 2015.11.2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규정을 둔 배경에 대해, 병무청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귀순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이념이 다른 체제에서의 성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⁷¹⁾ 즉 북한이탈주민의 성장 과정의 차이 등에 따른 정체성 혼란 문제와 국내 조기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이해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탈북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병역면제 제도에 따라 대다수의 탈북청소년들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다.⁷²⁾ 이러한 점은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및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출신에 대해 정체성, 이념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를 허용해 주다 지난 2010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자긍심 고취와 체제 적응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는 차별 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한 헌법과 병역법 규정을 고려하는 한편, 서로 다른 이념 체제하에서 성장한 정체성 문제 및 국내 조기정착과 적응 지원을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병역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사실상 무조건적인 병역면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조문)를 삭제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 복무 부적응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71)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둔 배경’을 문의하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1472758, 2023.11.13.)에 대해 병무청에서 통지(2023.11.23.)한 결과임.

72) 김병기, 전계보도자료

제6장 결 론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일반적 시민이므로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온전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군 입대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로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일반국민들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크레첼(R. Krechel)은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 두 가지로 구분하고, ‘체제통합’은 정치 및 경제제도의 통합이며, ‘가치통합’은 체제통합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통합은 “체제통합이라는 하위체제의 통합과 가치통합이 모두 이루어져야 진정하게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이 주는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 병역법 개정 및 합리적 기준 설정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수행 기회 제공 등 현행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병역법상 ‘북한이탈주민 대상 출원(出願)에 의한 병역면제’ 규정이 북한이탈주민들 중 일부가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면 ‘출원’ 조건을 삭제하여야 하고, 국내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 등 시혜적 차원에서 병역이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면 굳이 ‘병역면제’가 아니라 ‘징집면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입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사회통합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찾아보았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도 깊은 1:1 면담을 통해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와 독일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에 따른 문제점으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지위를 갖는 다문화 가정 출신자에 대한 전면적 병역의무 부과와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평시 완전한 병역면제가 얼마나 특별한 규정이며,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평시 군 내에서 대북정보 분석·감청, 정훈업무 등에의 활용을 제한하고, 전시·유사시 군사지원업무를 위한 근로소집대상으로의 강제 동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필요성으로, 대한민국 일반인과 동일한 병역의무 이행이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중·장기적으로 온전한 한국 사회동화와 안정적 정착, 형평성 제고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군사적 필요성으로, 평시 북한지역·전술연구를 지원하고, 북한군 전술에 기초한 대항군 역할 지원이 가능하며, 전시 민군작전과 안정화작전 등에 투입하여 한국군의 전투수행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군인, 관리직, 전문직, 예술체육 등 다양한 직종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유입되고 있고, 출신 지역별로도 북한 전역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전시·유사시 북한지역별 담당 민사작전부대 및 안정화작전부대와 연계하여 유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국내 입국 시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공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징집대상 연령인 19세가 넘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입국하자마자 병역판정검사부터 받아야 하고, 국내환경에 적응하는 기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등 연령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병역의무 면제연령인 36세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입영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기피자를 양산하게 되어 오히려 국내정착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기간으로 5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국적법>에서 외국인의 일반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 입국 후 5년 경과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어도 중학교 입학 연령인 12세 이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고 청소년기를 보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의 조화 차원에서 타당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국민정서, 안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익힐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사회통합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업무 및 정훈·유해발굴 등 후방부대 또는 비전투부대에 우선 배치하여 복무토록 한 후, 과도기 단계의 시행결과 평가를 토대로 전방·전투부대 배치 등으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수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군 복무 부적응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 내에서 크레첼(R. Krechel)이 정의한 체제통합은 물론, 가치통합에 이르는 온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성장 과정 등의 차이에 따른 정체성 혼란 문제 및 국내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향후 탈북 청소년의 수 증가 또는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공정성 및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제도화가 사회통합 강화에 있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데 이어,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병역의무 부과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단계적 군복무 확대방안을 제안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병역의무 이행 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향 도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 간 나타날 수 있는 이념적 정체성 혼란 및 부대관리상 문제점 등 부작용과 그 극복방안에 관해서는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 간에 완전한 한국사회 동화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병역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탈북 청소년의 자진 병역의무 이행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날 탈북청소년의 병역의무 이행 증가에 대비하여 전·평시 군 내 세부적인 활용방안 및 부작용과 그 극복방안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문

-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 연구』, 28, 2(2010): 269-288.
- 노석조.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8.
-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96, 0(2012): 241-286.
- 권숙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 연구』, 23, 1(2014): 101-126.
- 오주영·정해빈.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공익과 인권』, 통권, 13(2013): 287-324.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광주, 전남대학교, 2016년 11월 11일.
-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 1(2019): 61-92.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4, 1(2003): 369-390.
- 이원희. 북한이탈주민의 실상과 군사적 활용방안 연구 -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한국군사학논총』, 2, 2(2013): 125-153.
- 이병연. 통일을 대비한 민군작전 추진 전략: 탈북자 활용방안 중심으로. 연구논문, 국방대학교, 2013.
- 전성우.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총서』, 97, 4(1997): 1-44.
- 조종욱. 전시 자유화지역 안정화작전간 탈북주민 활용방안. 연구논문, 합동참모대학, 2017.

최대석, 박영자.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51, 1(2011): 187 - 215.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 1(2012): 271-300.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2년 12월.

Chua, Amy. 『제국의 미래』. 이순희 역. 서울: 비아북, 2008.

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재 -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 『보도자료』, 2018년 2월 12일.

김병기 국회의원실. 북한이탈주민, 절대 다수는 병역면제 택했다. 『보도자료』, 2020년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및 검토보고서. 2009년 12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전문위원 권기원). 2015년 11월 13일.

국회 회의록
제75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2차 회의록. 1970년 12월 21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09년 11월 26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2009년 12월 29일.
제33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2015년 6월 16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5년 11월 24일.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 판결.

국방부, 다문화 군대 맞춰 탈북청소년 입대허용 추진. 『동아일보』, 2012년 5월 14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14/46219752/1>(접속일: 2023.11. 5.)

귀화자 군복무 의무화되나... 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위해 검토 『중앙일보』, 2018년 2월 1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66810>(접속일: 2023.10.26.)

군복무 마친 탈북자 1호 나왔다...국민의무 다했을 뿐. 『연합뉴스』, 2016년 6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609030800014?input=1195m>(접속일: 2023.10.1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사업 소개. 2023년 10월 9일 검색. http://www.withcountry.mil.kr/mbs/home/mbs/withcountry/subview.jsp?ic=withcountry_010100000000.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복무요원제도 소개. 2023년 11월 28일 검색.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4>.

사회복무요원제도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2023년 12월 1일 검색.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09 &mc1=usr0000179&num=7](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09&mc1=usr0000179&num=7).

정보공개청구

병무청. 통지 결과(접수번호 11472758). 2023년 11월 23일.
국방부. 통지 결과(접수번호 11472810). 2023년 11월 16일.
법무부. 통지 결과(접수번호 11472877). 2023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 통지 결과(접수번호 11472412). 2023년 11월 20일.

2. 영문

Krechel. Reinhard.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9.

Landecker. Werner S.. Types of Integration and Their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6. No.4(Jan.), 1951.

<부록 1 - 북한이탈주민 심층 면접 질문지(양식)>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 관련 인터뷰]

현행 병역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병역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병역제도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관련논문 작성에 참고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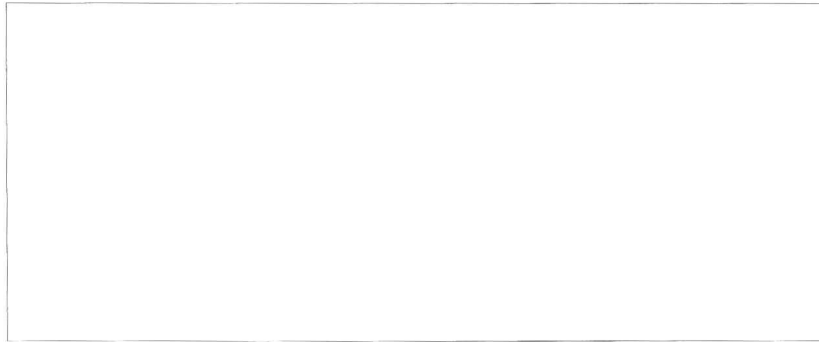
문1) 귀하의 연령, 직업 및 북한에서의 병역이행 여부 등 개인 소개를 해주십시오.

문2)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남성)은 일반국민과 같이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이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병역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면제는 일반적인 병역면제(평시 현역 복무 면제, 전시 군사지원업무 수행)와 달리 전·평시 모든 병역의무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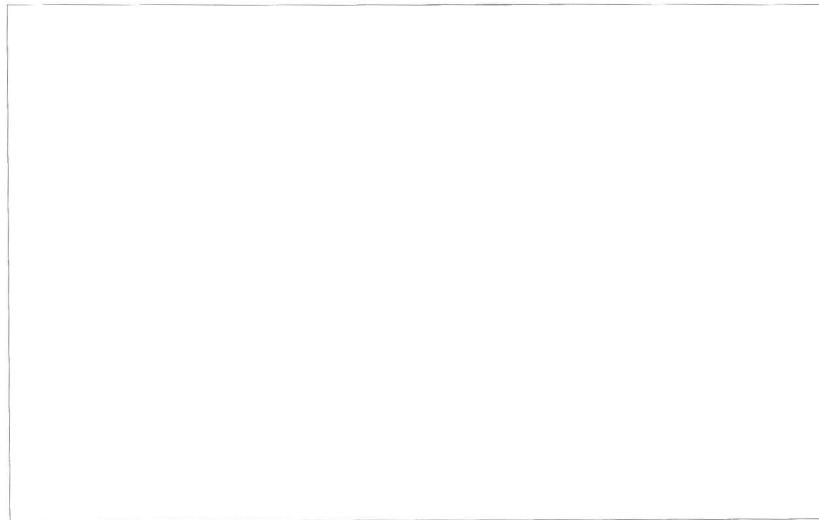
2-1) 북한이탈주민들이 현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면제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탈북 청년들이 군 입대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2) 북한이탈주민들이 현행 병역면제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및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3)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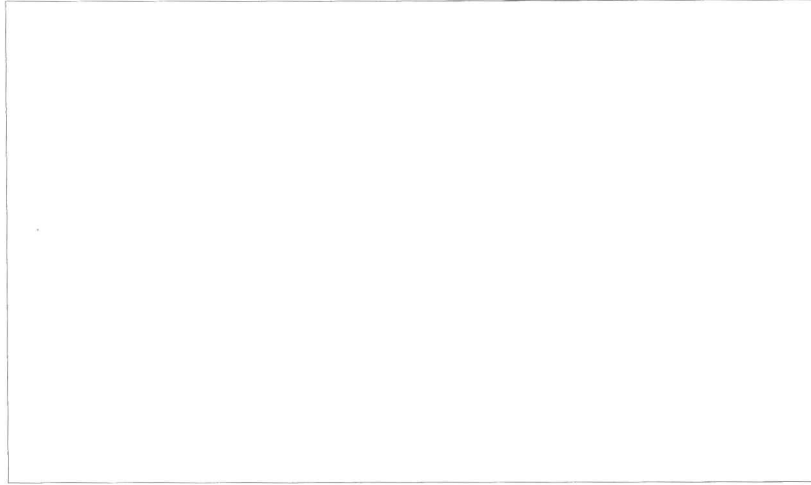
또한,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가 현실적으로 본인 및 자녀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이나 사회통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지, 있다면 본인 및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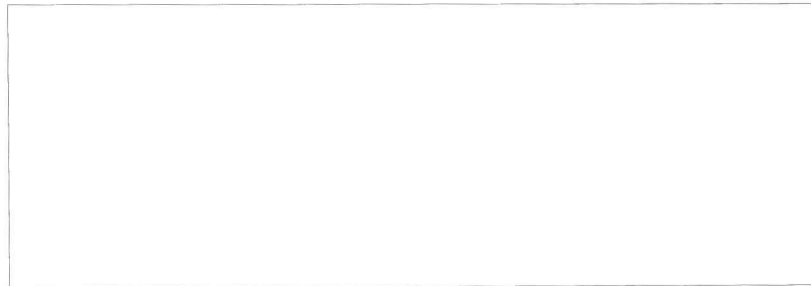
문4)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시 한국 사회, 한국군 및 북한이탈주민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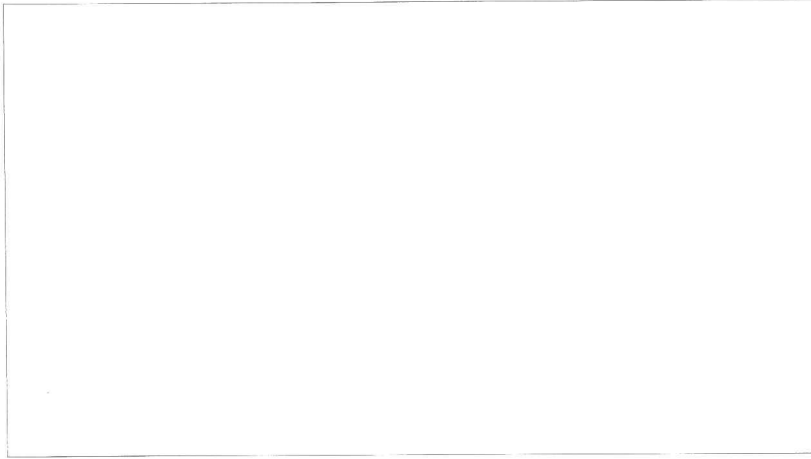
4-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제도화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5) 만약 북한이탈주민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국방 업무 중 어떤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본인 및 軍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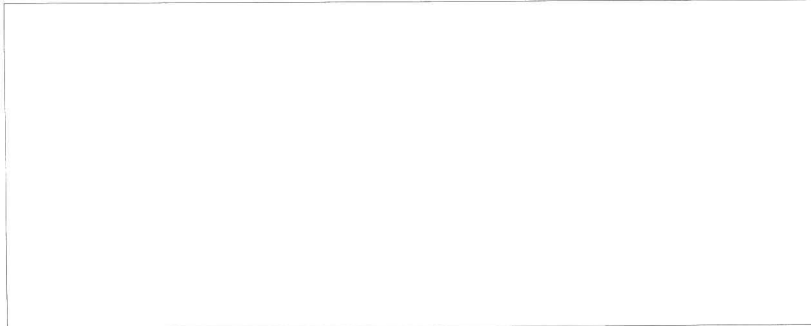


문6) 만약 북한이탈주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면 병역의무 부과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국민과 동일하게(만19세-36세) 또는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고려가 필요하다면 그 부과기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7) 만약 북한이탈주민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병역이행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대체복무 → 후방·비전투부대 → 전면적 확대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3급 현역,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등), 5급 전시간료역(평시 현역과 예비군 복무 면제,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 수행), 6급 병역면제(전·평시 완전 면제)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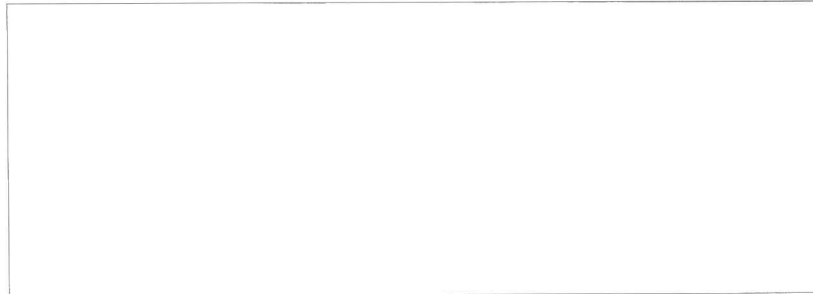


문8)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출신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차별없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한 헌법과 병역법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출원(出願)에 의한 병역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병역법 개정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한국군 발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문9) 지금까지의 인터뷰 내용에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기타 제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Lee, Hee Sang

National Security Policy

Graduate School of Defense Managemen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also fully-fledged subject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concerning military service,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empt from military service if they wish. North Korean defectors are perceived as a discriminatory system that restricts military enlistment. At the same time, the general public raises the issue of equity, which is a negative factor in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Meanwhile, R. Krechel divides social integration into system integration and value integration. In addition to this, R. Krechel claimed that true social integration is only possible when "value integration," which forms a collective identity by sharing the same values as 'integ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s achieved.

Thu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was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of the necessity of amending military service law considering the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fulfilling their military duty. If th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by North Korean defectors' is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becoming internal enemies, the 'Application' condition should be removed,

and the burden of military service should be removed in support of the domestic settlement. If it is intended to alleviate it, it is enough to dispose of a conscription exemption, not an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was examined,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inclusion was sought from historical lessons. Subsequently, the status of fulfill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for defectors from North Korea was reviewed through the purpose and legislative form of Article 64, Paragraph (1) 2 of Military Service Act. As a result of th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 examined how exceptional the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along with social equity and social integration. This not only weakened the identities of South Korean citizens but also confirmed that there were problems such as restricting the advantag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North Korea and mobilizing recruitment during wartime.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and considerations for institutionalizing North Korean defectors'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were revie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social necessity, the same military service performance as the general public reinforces social integration by resolving the issue of identity and equ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ly, as a military necessity, it is possible to support peacetime tactical research in North Korea and the role of opposing forces based on North Korean tactics, an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ROK military's ability to combat warfare by putting it into wartime civilian and stabilization operations.

Thirdly, the 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fulfilling their military duties. When entering the country after the age of 19, not having a period of adjustment to the domestic environment or not wanting to join military service may show that one is an army dodger, which may impede social integration.

Accordingly, the following ar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necessary to impose military obligations on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the criteria for imposing a military duty on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the period of protection of residence (five year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General Naturalization Requirement of Foreigners (Keeping Address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under the Nationality Ac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eriod for those who have spent more than five years in Korea. In addition, impos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the case of entering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education at least before the age of 12, the middle school admission age, is appropriate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harmony of social integration.

Second, it should be expanded gradually for the smooth settlement of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Beginning with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hich includes public service work that can cultivate the community values of our society, it is gradually assigned to the rear or non-combat units, such as North Korean work that can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and Hun and Hazard Excav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ransitional evaluation, it is advisable to increase the level in stages, such as by expanding the front combat units.

Third, the military service law should be revised to institutionalize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rticle 64 (1) 2 of the Existing Military Service Act shall be deleted, and military service exemption shall be allowed only if it falls under the reas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aladaptation of military service. Even if the current regulations on military service are the product of identity confusion due to differences in growth processes and policy considerations to support early settlement and social adaptation in

Korea, the dead zone of the multicultural army is resolved due to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improve equity and social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implementa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for defecto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based on previous reviews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integration a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e necessity and ways to improv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are also investigated. The conclusion of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duty obligations and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for this purpose is drawn, and the objective standard of imposing a military duty and the step-by-step military service expansion plan are proposed to settle the military service performance systems and minimize side effects smoothly. The policy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social integration are presented in detail.

However, because this study focused on deriving the need for and direction for improv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it has the limitation of not researching problems and solutions that may arise while North Korean defectors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Recentl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been required t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s Korean citizens for complete assimila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be continued on specific ways to utilize the military in wartime and peacetime and to overcome side effects in prepara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for North Korean defector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exemption